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1734호(號) 1932(昭和 7)년 10월 18일 화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546호(號)

조선국유철도 화물운임(朝鮮國有鐵道貨物運賃)에 대하여 아래[左]와 같이 할인(割引)함.

1932(昭和 7)년 10월 18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우가키 가즈시게(宇垣一成)

1 품 명(品 名) 명란젓[明太子]

2 발 역(發 驛) 갈마(葛麻), 원산(元山), 함흥(咸興), 흥남(興南), 서호진(西湖津), 여호(呂湖), 퇴호(退湖), 삼호(三湖), 전진(前津), 경포(景浦), 영무(靈武), 신포(新浦), 양화(陽化), 신창(新昌), 차호(遮湖)

3 착 역(著 驛) 부산(釜山)

4 급종별(扱種別) 소화물급(小貨物扱), 톤급(瓲扱: 특별톤급[特別瓲扱]을 제[除]함), 차급(車扱)

5 임 률(賃 率) 보통임률(普通賃率)의 1할(割)5푼(分) 감(減)

6 기 간(期 間) 1932(昭和 7)년 10월 18일부터
1933(昭和 8)년 3월 31일까지

7 기 사(記 事) 가 보통임률(普通賃率)에 의(依)하여 특정구간(特定區間) 통계(通計) 1300톤(瓲) 이상(以上)을 탁송(託送)한 것에 대(對)하여 기수운임(旣收運賃)과 본(本) 임률(賃率)에 의(依)한 운임(運賃)과의 차액(差額)을 환급(還給)하는 것으로 함.

나 특별톤급(特別瓲扱)에 의(依)하여 출화(出貨)한 수량(數量)은 전호(前號)의 수량(數量)에 가산(加算)하는 것을 득(得)함.

다 본(本) 운임(運賃)은 지정운송취급인규칙(指定運送取扱人規則) 제10조(條)제3호(號) 적용상(適用上) 보통운임(普通運賃)으로 간주(看做)함.

라 본(本) 임률(賃率)의 적용(適用)을 받고자 하는 것은 매월(每月) 아래[左]에 게시(揭示)한 양식(樣式)의 조서(調書)를 발역(發驛) 역장(驛長) 경유(經由) 조선총독부 철도국 영업과(朝鮮總督府鐵道局營業課)에 제출(提出)하는 것으로 함.

갈마(葛麻) 외(外) 14역발(驛發) 부산착(釜山著) 명란젓[明太子] 운임조서(運賃調書)

월분[月分] 급(扱) 하송인(荷送人)

화물운송통지서(貨物運送通知書)	발역(發驛)	수량(數量)	보통운임(普通運賃)	할인운임(割引運賃)	환급액(還給額)	기 사(記事)

일부(日付)	번호(番號)									
계(計)										

비고(備考) 급종별(扱種別)마다 별장[別葉]으로 할 것